

구미시 재난현장
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
등에 관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·조정하기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을 개정(2020. 6. 4. 시행)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·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단장의 임무, 실무팀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안전재난과,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공동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 중 행·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,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「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이 된다.

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경우에는 타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지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

제5조(단장의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2. 모집·배치팀
3. 활동관리팀

4. 활동지원팀

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 1을 참고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,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의 위치)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

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 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대책본부장은 「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할

수 있고,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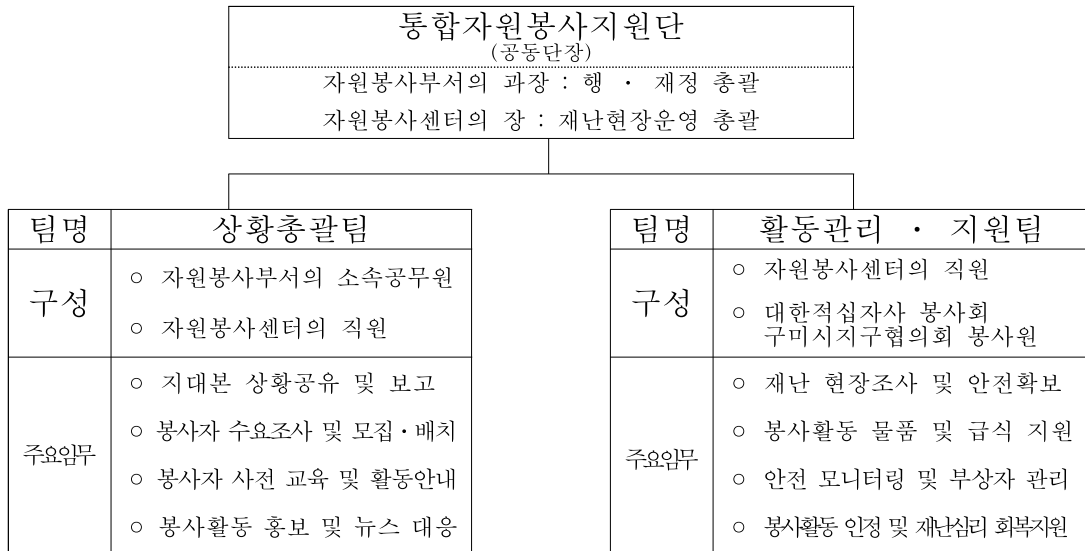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지원단 운영 실무팀 편제 및 임무(제6조제2항 관련)



구 분	직 위	주요 임무
단 장	자원봉사부서의 과장	▶ 지원단의 행·재정 총괄
	자원봉사센터의 장	▶ 지원단의 재난현장 운영 총괄
상황 총괄팀	자원봉사부서 담당계장	▶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 공유·보고 등) ▶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
	자원봉사부서 담당자	▶ 지원단 관련 행·재정 지원
	자원봉사센터 직원	▶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
	"	▶ 자원봉사자 교육·배치
	"	▶ 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
활동관리 지원팀	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	▶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·장비 소요 파악
	자원봉사센터 직원	▶ 재난 현장조사 및 안전확보
	"	▶ 봉사활동 인정 및 부상자 관리
	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구미시지구협의회 봉사원	▶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및 급식 지원
	"	▶ 안전모니터링 및 재난심리 회복지원

※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

관계법령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·등록
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소 관 부 서		새 마 을 과
입 안 자	과 장	권 영 복
	담 당	이 연 경
	담 당 자	강 홍 구 (480-6813)